

제 안 요 청

용역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2026. 6.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건 설 과

목 차

I. 과업 개요	1
II. 제안요청내용	10
III. 제안서 일반사항	12
1. 입찰 참가자격	12
2. 사업자 선정방식	12
3. 평가 및 협상기준	13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13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4
6. 제안서 설명	15
[별지 서식]	16~29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규칙)은 「도로법」 제 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 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규칙이며, 해설을 통하여 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칙은 2020. 3. 6(국토교통부령 제706호)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지시거 기준 개정에 따른 2021. 12. 13(국토교통부령 제922호) 일부 개정은 이루어졌으나, 이후 「도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지하도로 설계지침 (2023)”을 비롯한 도로설계와 관련된 각종 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 기준 간의 일치된 내용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에는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도로법 일부 개정 2023. 8. 16)하고, 인공지능과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 예고되며, 도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따라서, 기존 규칙 및 해설의 내용을 보완하고, 미래환경변화를 대비한 미래 도로 건설의 지원, 도로의 고유기능 강화에 기여하며, 국내 도로건설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를 추진한다.

3. 과업 범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 관련 법률·기준·지침 등의 제·개정 현황 및 도로관련 연구 내용의 조사, 분석, 검토
- 개정 항목(미개정 항목 포함)과 기존 규칙과의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개정 초안 작성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최종 개정 안 작성

2. 과업의 내용

가. 전체 과업내용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 관련 법률·기준·지침 등의 제·개정 현황 및 도로관련 연구 내용의 조사·분석, 검토
 - 기존 규칙의 일부 개정(2020) 이후 변경된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내용 조사·분석, 검토
 - 도로법 제2조(정의),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등 일부개정(2025.12.0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제3조와 제 8조 규정 관련 검토 필요한 사항
 - “지하도로 설계지침” 등을 비롯한 도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지침 등 조사·분석, 검토
 - 타법률·지침 등 조사· 분석, 검토
 - 관련 기관의 기준 및 방침 조사·분석, 검토
 - 도로관련 최근 연구자료 조사·분석 및 검토
 - 직선구간에서 이상기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최소화 방안으로 노면 배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횡단경사 상향 검토**
 - 배수 취약구간인 평면곡선부 횡단경사 변이구간의 노면배수 성능 향상을 위해 **종단경사 최소 기준 상향 검토**
 - **연결로 최대 편경사 상향**을 통한 주행차량 교통안전성 향상
- 개정 항목(미개정 항목 포함)과 기존 규칙과의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조사,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정리, 기존 규칙과 비교

- 개정 항목 및 내용의 수정, 삭제, 신설 여부 검토
- 미개정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기존 규칙의 목차·내용의 적정성 검토, 오류·불합리·표현 과다한 문장 등 수정

** 기존 규칙과 조사내용 비교하기 위한 표(3단- 기존/조사내용/비교분석결과)

○ 개정 초안 작성

- 개정 초안(신·구대비표) 작성, 검토결과에 따른 본문 내용* 정리
- * 개정 항목과 미개정(보완) 항목의 내용을 수정, 정리
- 자체 자문회의 개최,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최종 개정 안 작성

- 개정 초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개정 수정안(신·구대비표) 작성
- 자문 의견 등 반영, 개정 최종안 작성

나. 1차년도 과업내용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 관련 법률·기준·지침 등의 제·개정 현황 및 도로관련 연구 내용의 조사·분석, 검토

- 기존 규칙의 일부 개정(2020) 이후 변경된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내용 조사·분석, 검토
- 도로법 제2조(정의),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등 일부개정(2025.12.0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제3조와 제8조 규정 관련 검토 필요한 사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제1조 목적 수정, 제29조의 2 및 제43조의 2 신설)

- “지하도로 설계지침” 등을 비롯한 도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지침 등 조사·분석,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타 정부부처의 관련 법률·지침 등 조사·분석, 검토

-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의 기준 및 방침 조사·분석, 검토
- 도로관련 최근 연구자료 조사·분석 및 검토
 - 직선구간에서 이상기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최소화 방안으로 노면 배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횡단경사 상향 검토
 - 배수 취약구간인 평면곡선부 횡단경사 변이구간의 노면배수 성능 향상을 위해 종단경사 최소 기준 상향 검토
 - 연결로 최대 편경사 상향을 통한 주행차량 교통안전성 향상
- 개정 항목(미개정 항목 포함)과 기존 규칙과의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조사,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정리, 기존 규칙과 비교
 - 개정 항목 및 내용의 수정, 삭제, 신설 여부 검토
 - 미개정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 기존 규칙의 목차·내용의 적정성 검토, 오류·불합리·표현 과다한 문장 등 수정
 - ** 기존 규칙과 조사내용 비교하기 위한 표(3단- 기존/조사내용/비교·분석결과)
- 개정 초안 작성
 - 개정 초안(신·구대비표) 작성, 검토결과에 따른 본문 내용* 정리
 - * 개정 항목과 미개정(보완) 항목의 내용을 수정, 정리
 - 자체 자문회의 개최,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다. 2차년도 과업내용

1) 관계기관 의견 수렴, 최종 개정 안 작성

- 개정 초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개정 수정 안 (신·구대비표) 작성
- 자문 의견 등 반영, 개정 최종 안 작성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총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2차년도 : 계약일부터 4개월

4. 과업추진방식

- 도로·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일정계획 및 회의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자문결과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방침변경으로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 발생 시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변경하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준용한다.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기타 과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목록

가.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다.

-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나. 보고서 : 중간보고서는 준공 전 9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은 연구용역 준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보고서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하여야 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 인쇄로, 도면은 칼라 복사로 하고 표지, 인쇄 양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월 이내	5 부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9월 이내	5 부	
최종보고서(안)	준공 1개월 전	5 부	
설계·시공 지침(안)	준공 1개월 전	5 부	
최종보고서	준 공 시	15 부	
도로구조규칙 해설	준 공 시	150부	

8. 보안 대책

- 가. 수급인과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 과업 수행 중에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한 사용이 불가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 마.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바.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함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 과업책임자는 제반 보안사항을 조치·감독하기 위하여 보안 정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한다.

- 아. 수급인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작업 수행 시 작업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자. 감독관은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을 위반하는 과업수행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차.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카.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타.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과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파.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하.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2)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발행 금지
 - 3)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조치 할 것

9.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년도(8개월)								2차년도(4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관련 법률·기준, 연구내용 조사, 분석 및 검토	5	5		5	5	5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5	5				
	개정 초안, 수정안 작성			5	5		5	5	5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5			5	5		5		
					1차 자문 회의			관계 기관 의견	2차 자문 회의		(3차 필요시)		
	최종 개정 안 작성 및 성과품 납품									5	5	5	5
합 계(%)		5	5	5	15	5	10	15	15	5	10	5	5
누 계(%)		5	10	15	30	35	45	60	75	80	90	95	100

II. 제안 요청내용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 관련 법률·기준·지침 등의 제·개정 현황 및 도로관련 연구 내용의 조사·분석, 검토
 - 기존 규칙의 일부 개정(2020) 이후 변경된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내용 조사·분석, 검토
 - “지하도로 설계지침” 등을 비롯한 도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지침 등 조사·분석,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타 정부부처의 관련 법률·지침 등 조사·분석, 검토
 -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련 공공기관의 도로계획 및 설계 관련 내부 기준 및 방침 조사·분석, 검토
 - 도로관련 최근 연구자료 조사·분석 및 검토
- 개정 항목(미개정 항목 포함)과 기존 규칙과의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조사,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정리, 기존 규칙과 비교
 - 개정 항목 및 내용의 수정, 삭제, 신설 여부 검토
 - 미개정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 비교·분석 대비표** 작성

* 기존 규칙의 목차·내용의 적정성 검토, 오류·불합리·부적정 표현, 문장 등 수정

** 기존 규칙과 조사 내용 비교하기 위한 표[3단- 기존/개정 안/비고(사유, 근거 등)]

◦ 개정 초안 작성

- 개정 초안(신구대비표) 작성, 검토결과에 따른 본문 내용* 정리

* 개정 항목과 미개정(보완) 항목의 내용을 수정, 정리

- 자체 자문회의 개최,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최종 개정 안 작성

- 개정 초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개정 수정 안(신구대비표) 작성
- 자문 의견 등 반영, 개정 최종 안 작성

IV.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라.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가.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나.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 통지

3. 평가 및 협상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1)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2)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3)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4)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5)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나. 협상방법

- 1) 가격협상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 1) 제안서 규격 : A4용지 50매 이내로 작성하며 세로쓰기
- 2) 부득이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 표를 제시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유의사항

- 1)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2)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5)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6)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7)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8)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9)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 부의 제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2) 가격협상 일시 : 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설명

-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필요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통보), 설명회에서 제안서 설명은 PPT로 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
- 나.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함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 방법	점수	배점
1	기관평가	◦ 연구인력 보유수(10점)	계량 평가	주1)	10
2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이해도 및 연구 접근방법의 우수성 및 적합성 - 연구내용의 이해도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가	주2)	30
3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	주2)	20
4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	비계량 평가	주3)	20
5	사회적 책임 평가	◦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채불 여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계량 평가	주3)	10
6	기타	◦ 발주자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10점)	비계량 평가	주2)	10
계					100

주1) 기관평가(10점)

- 연구인력 보유수(10점) : 5인 이상(10점), 4인(9점), 3인(8점), 2인 이하(7점)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도로, 구조, 교통 등) 기술사, 박사 등 연구 전문인력 보유수

주2) 비계량 평가(60점)

- 연구용역 내용의 이해도(10점)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우수성, 문제점 해결 접근방법(20점)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20점)
-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10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주3) 투입인력 평가(2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 비계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 도로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주4) 사회적 책임 평가(10점)

- 임금체불 여부(해당할 경우 2점 감점)
 -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해당할 경우 2점 감점)
 - * 공고일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 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 주1), 주3), 주4)는 공동도급 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은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평가점수 산정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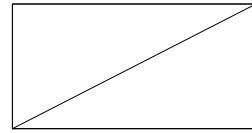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현황,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여부 등 제시	서식 - 2
III. 사업 수행부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수행전략 등 기술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기술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IV.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3 서식 - 4
V. 기타	발주자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양식 모음

1.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4.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5. 청렴계약서
6. 보안서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

업체명 : (인)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123456-1			
연구원					
연구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공학 전공, 박사(석사, 학사)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청	금액	

- 주) 1. 【서식 3】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123456-1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개정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서식1 활용)
2. 제안서 내용(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2 활용)
4.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서식3 활용)
5.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 현황(서식4 활용)
6.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7. 청렴계약서(서식5 활용)
8. 보안서약서(서식6 활용)